

특집 : 일제강점 초기의 판례와 법학(Ⅱ)

法井寺 抗日運動에 대한 法的 考察*

정금식**

목 차

- I. 머리말
- II. 植民地 刑事法源과 司法體系
- III. 法井寺 抗日運動에 대한 法的 分析
 - 1. 事件의 處理過程
 - 2. 適用 法條와 刑量
 - 3. 節次法的 檢討
- IV. 맺음말

[국문요약]

1918년 10월 제주도에서는 일본인을 축출하고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법정사에서 김연일을 중심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하였지만 실패하였다.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해 조선총독부는 대한제국법인 「保安法」과 일본 「형법」의 “騷擾罪”를 적용하여 처벌하였다. 주도자인 김연일에게는 법정최고형인 징역 10년에 처하는 등 엄격히 처벌하였고, 재판도 신속히 하였다. 이는 항쟁주도층과 제주도민을 격리시키려는 일본의 의도이었다. 조선총독부는 관련당사자를 적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처리하였다. 그러나 식민지조선의 형사법의 근간을 이룬 「조선형사령」은

* 본고는 본지에 수록된 (사)제주학회 특별 학술 심포지엄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의 항일운동사적 위상”(2004. 2. 28.; 서귀포시)의 발표문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또한 문준영 박사(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는 원고를 검토해주었다. 감사를 드리며, 본고의 오류는 필자의 책임이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인권보장의 핵심적 내용은 누락된 외견적인 것이었다. 일본의 대대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김연일 등 주동자는 즉시 체포되지 않은 채 상당기간 동안 제주도에 은신할 수 있었다. 법정사 항일운동이 특정종교집단만의 운동이 아닌 제주주민 전체의 지지를 받았음을 반증한다.

[주제어] 법정사, 독립운동, 조선형사령, 식민지 형사법, 보안법, 소요죄

I. 머리말

“法井寺 抗日運動”은 1918년 10월 법정사 주지 金蓮日이 주도하여 제주도 중문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항일운동이다. 김연일은 “왜놈이 조선을 합병한 후에 관리는 물론 상인 따위도 우리 동포를 학대하고 있다. 佛務皇帝가 출현하여 국권을 회복하게 될 것이니 우선 제주도에 있는 일본인 관리를 죽이고 상인을 섬 밖으로 구축할 것을 촉구”하였고, 10월 7일 오전에 하원리에 집합하여 8일 제주읍을 습격하기로 하였다. 실제로는 10월 7일 새벽에 서귀포로 진격하여 제주와 서귀포를 잇는 전선과 전주를 절단하였으며, 일본인 등을 구타하고 또 중문리의 경찰관 주재소를 방화하여 전소시키고 일본 경찰을 포박하였다. 그러나 일본 경찰의 적극적인 진압작전에 박주석 등 봉기주도자 38명이 체포되고 주지 김연일 등이 도피하여 항일운동은 종식되었다.¹⁾

이 운동과 관련되는 자료로는 <1918년 刑事事件簿>(光州地方法院 木浦支廳 檢事分局), <1918년 受刑人名簿>(光州地方法院 濟州支廳), <1923년 6월 29일 선고 鄭九鎔(또는 龜龍) 大邱覆審法院 判決文> 등이 있다.²⁾ 그리고 1919년의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자료와 1934년의 경상북도 경찰부의 자료가 있다.

본고는 식민지기 제주사회의 지리적·지역적 특성과 이에 따른 조선총독부 정책에 대한 고려 없이 단편적으로 일본의 공식적인 자료인 위 <刑事事件簿>

1)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연구는 상당하나, 본고에서는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는 박찬식, 『법정사 항일운동의 역사적 성격』, 『제주도연구』 22(제주학회, 2002)를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2) 이 자료들은 김창민 교수가 제공하였으며, 지면을 빌어 감사를 드린다.

<受刑人名簿>, <鄭九鎔 控訴審 判決文>만을 토대로 오로지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³⁾ 먼저 재판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918년 당시 식민지 조선의 刑事法源과 法體系를 소개한다(제2장). 이어서 <刑事事件簿>, <受刑人名簿>를 통하여 사건의 처리과정을 복원한 다음(제3장 제1절), 實體法的으로 항일운동자들에게 적용된 법령을 검토하여 운동의 성격을 정리하고(제3장 제2절), 節次法的으로 분석하여 식민지 刑事司法의 특징을 검토한다(제3장 제3절).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제4장). 아울러 법정사 항일운동과 이의 처리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돕고 또 향후 다른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부록으로 관련법령을 발췌·소개한다.

II. 植民地 刑事法源과 司法體系

일본은 1910년 8월 29일 합방과 동시에 緊急勅令 제324호 「朝鮮에 施行해야 할 法令에 관한 件」을 공포하여 식민지 조선에서 법령의 체계를 규정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같은 날 制令 제1호 「朝鮮에서의 法令의 效力에 關한 件」을 공포하여 舊韓國 法令과 統監府 法令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긴급칙령은 帝國議會의 승인과정에서 행정부인 조선총독에게 입법권을 부여한 것은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그렇지만 1911년에는 긴급칙령과 내용이 완전히 동일한 법을 제30호 「朝鮮에 施行해야 할 法令에 관한 件」을 공포하여 조선총독에게 독자적인 制令制定權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1912년 3월에는 制令 제11호 「朝鮮刑事令」을 공포하여 식민지 형사법의 체계를 정비하였다. 「조선형사령」에서는 일본의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依用하였으며 부칙

3) 현지인의 구전자료 등을 종합하면 사실관계 등을 좀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복원할 수 있을 것이지만, 필자는 이러한 작업을 직접 수행하지 못하였고, 학술 심포지움 자료집에 수록된 김창민 교수의 발표문 「법정사 항일운동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참조하였다.

에서는 「刑法大全」(1905년 제정) 등 명시적으로 大韓帝國의 법령을 폐지하였다.⁴⁾ 1910년의 제령 제1호 등에 따르면 「조선형사령」에서 명시적으로 폐지되지 않은 조선의 법령은 여전히 유효하였다.⁵⁾ 따라서 항일운동이 발발한 1918년 당시의 형사법원은 원칙적으로 일본의 「형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명시적으로 폐지하지 않은 대한제국의 법령이었다(이하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법령은 모두 일본 법령임).⁶⁾

본고의 기초자료인 <刑事事件簿>, <受刑人名簿> 등의 근거법령은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일본 司法省 내지 裁判所나 檢察 또는 監獄에서 제정한 것을 그대로 이용한 듯하다.⁷⁾ 여기에 기재되는 내용은 사건의 처리과정을 간접적이거나 알려주기 때문에 그 樣式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표 1> 형사사건부 양식 및 해설

進行番號	1122		해당 청에서 사건을 접수한 순서	
接受	10月 10日		사건을 접수한 일자	
主任檢事	堀江		사건 담당 검사	
接受區別 現行, 非現行 發覺原因	事件標目	直現非受認知	騷擾	검사가 사건을 직접 접수 여부, 현행범 여부, 고소 또는 검사의 인지 여부, 비해당 사항을 지웠음(이하 등)

- 4) '依用'이란 표현은 「朝鮮刑事令」 제1조 본문 말미에서 “다음의 법률에 ‘依’한다”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일본법률을 그대로 식민지 조선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制令인 「조선형사령」에서 이를 적용할 것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적용되는 것으로, 법률의 내용은 같지만, 일본의 법률이 아닌 조선총독의 制令이므로 범형식적으로는 엄연히 다르다. 식민지 조선은 1945년 까지 조선총독의 제령으로 일본법을 간접적으로 적용하였기 때문에 일본과는 법령의 형식이 다른 ‘異法地域’이었다. 制令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창록, 「制令에 관한 연구」, 『법사학연구』 26(한국법사학회, 2002) 참조
- 5) 이러한 원칙은 제령의 중대 또는 勅令으로 일본법령의 적용이 확대되기는 하였지만, 식민지 조선에서 법령의 기본구조이었다.
- 6) 이상은 정공식, 『한국근대법사고』(박영사, 2002), 214~215쪽 참조.
- 7) 현재 한국에는 「刑의 失效 등에 관한 法律」 제3조와 위 법률시행에 따른 업무지침 「대검예규 제125호」에 근거한 “수형인명부”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조, 제59조」에 근거한 “범죄사건부”가 있다. 식민지기의 것과 현재의 것은 부분적인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인 내용과 형식은 유사할 것이다(이는 박철 검사의 도움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감사한다).

被告人 本籍 住所, 族稱, 職業 氏名, 年齡		제주도 좌면 도순리 법정사 주지 김연일 연명불상	피고인의 인적 사항
拘留		年月日 檢 豫 公	拘束 일자와 원인
釋放		年月日	석방 일자
保釋 執行 責付 取消		年月日 豫 公 保 責 年月日	보석 여부와 그 일자
起訴 檢事 不起訴 移送		年月日 豫 公 年月日 年月日	검사의 처분과 그 일자 기소: 예심청구 또는 공판회부청구 불기소: 불기소 처분(석방 / 태형) 이송: 다른 검사에 보냄
豫審	終結	年月日	예심은 重罪나 복잡한 사건에 대해 공판개시 전에 중립적인 예심판사가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
	抗告: 申立結果	年月日	
	公判送致	年月日	
公判	判決	年月日 對 關	판결선고일과 결석 재판 여부
	罪名 및 判決要旨	소요 ... 징역 10년	적용법조와 형량
故障			결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對席裁判
判決確定		年月日	판결의 확정일
執行 放免 指揮		年月日 執行 放免	판결에 따른 처리
上訴結果簿 番號			상소에 대한 기록
備考			결석판결 여부, 병합심리 등 기록

* 명조체는 인쇄된 부분이며, 이태릭체는 기입한 부분이다.
인쇄된 부분 중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으로 표시하여 지웠다.

〈표 2〉 수형인명부 및 해설

本名	異名	김연일	불무항재	피고인의 인적 사항
生年月日		48		
族稱	職業	무직		
住所	出生地	本籍	도순리 불상 경북 ...	
罪名		소요 보안법 위반		적용 법조
刑名 刑期		懲役 10년 罰金 --- 笞 ---		형량
題刑度數 및 對關席의 區別		1度 關席		재판에서 審理 횟수와 결석판결 여부
判決		8年 2月 4日		판결 선고일
確定		年月日		판결 확정일
判決廳名		목포지청		판결을 선고한 법원
備考				復權 일자 등

* 명조체는 인쇄된 부분이며, 이태릭체는 기입한 부분이다.

<刑事事件簿>, <受刑人名簿>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은 크게는 피고인, 즉 항일운동 참여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부분과 그들에 대한 사법적 처리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후자는 다시 수사에서 기소에 이르는 부분과 재판절차 및 재판결과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여자의 인적사항 부분에는 연령, 주소, 직업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것만으로도 그들의 사회적 지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수사 부분에서는 접수일자과 구속일 등으로 사건처리의 시간적 순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재판단계에서는 적용법조와 형량 등으로 항일운동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참여자에 대한 분석은 이미 연구가 되었으므로⁸⁾ 생략하고 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Ⅲ.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법적 분석

법적 판단의 전제는 사실관계가 확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사건에 대해서는 참여자에 대한 제1심 판결문을 현재로서는 발견할 수 없지만 다행히 제2심 판결문만 남아 있다. 위 <형사사건부>와 <수형인명부>를 통하여 사건 처리의 윤곽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정구용에 대한 판결문으로 적용법조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기록에 드러나지 않는 내용은 관련 법령의 해석과 또 상상력을 동원하여 보충하기로 한다.⁹⁾

1. 事件의 處理過程

<형사사건부>에는 모두 66명이 등재되어 있다. 10월 10일에 접수된 사건(진

8) 김창민, 「법정사 항일운동 가담자와 운동의 성격」, 『제주도연구』 22(제주학회, 2002) 참조.
9) <형사사건부>와 <수형인명부>는 <부록 1: 관련자 명단>으로 정리하였다. 본고에서는 부록의 일련 번호로 인용하기로 한다.

행번호 1122; 1~41)과 11월 6일에 접수된 사건(진행번호 1122; 42~44), 11월 26일에 접수된 사건(진행번호 1251; 45~66)으로 구분되는데, 모두 접수일자에 留置하였을 것이다. 먼저 41명(1~41)에 대해서는 10월 21일 旬留¹⁰⁾하여 11월 11일에 39명을 기소하고 10명을 불기소하였고, 또 3명(42~44)에 대해서는 11월 6일에 접수·구류하여 11월 11일에 참여 정도에 따라 2명을 기소하고 1명을 불기소하였다. 22명(45~66)에 대해서는 11월 26일에 접수하여 이튿날 15명을 기소하고 7명을 불기소하였다. 마지막 22명에 대해서는 구류처분을 하지 않았는데,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아 벌금형 등 人身의 구속을 예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66명 48명을 기소하고 18명을 불기소하였다. 48명 가운데 2명은 기소 후 판결선고 전에 사망하였고, 나머지 46명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재판을 받아 이듬해인 1919년 2월 4일 판결이 선고되었다.

참여자의 검거는 크게는 두 차례, 작게는 세 차례에 걸친 이루어진 듯하다. 우선 적극적으로 참여한 41명에 대한 검거가 있었고(1-41), 곧 이어 동급의 3인을 검거하였다(42-44). 그리고 이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단순히 참여한 22명을 검거하였다(45-66). 이는 “진행번호 1122” 44명 가운데 2명이 옥사하였으며(강춘근[28], 강수오[37]), 11명만 불기소처분으로 석방되었고, 나머지 31명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반면에, “진행번호 1251” 22명 가운데 7명은 불기소처분으로 석방되었고, 15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경찰과 검사가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한 66명만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기록에는 참가자는 약 400명에 이른다고 한다.¹¹⁾ 물론 제주도라는 육지와 단절된 제한된 지역에서 조선총독부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참여자 전원을 검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도 않았을 것이다.¹²⁾ 그렇지만 제주도민 전체의 민심도

10) 일본 형사소송법상 旬留는 오늘날 拘束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벌의 일종인 拘留와는 다르다.

11) 1920년 4월 12일자 『매일신보』에서는 “김연일이 부하 700명을 거느렸다”고 보도하였다(김정인, 「법정사항일투쟁의 민족운동사적 위상」, 『제주도연구』 22(제주학회, 2002), 56쪽에서 재인용).

12) 이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당시 제주도 전체와 서귀포, 중문 등지의 인구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1910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의 인구는 124,134

고려하고 또 육지로 봉기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바람직한 사실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어쨌든 조선총독부는 법정사 항일운동이 외부로 드러나 조선민중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은 것을 꺼렸음은 분명하다.¹³⁾

그러나 위에 나타난 66명 모두 체포된 것은 아니다. 위 기록을 보면 闕席判決을 받은 자가 주도자인 김연일을 포함하여 8명이 나온다. 일단 이들은 봉기 일인 1918년 10월부터 재판이 있는 1919년 2월까지 체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형사사건부>와 <수형인명부>에서 체포되지 않은 이들에 대한 기록을 정리한 것이 <표 3>이다.

〈표 3〉 권석판결자 명단

	성명	형량	판결 선고일	故障 신청일	판결확정일		판결집행일	복권
					형사사건부	수형인명부		
1	金蓮日	징역 10년	8. 2. 4.	×	9. 4. 5.	×	9. 4. 5.	`48
36	姜昌奎	징역 8년	8. 2. 4.	×	12. 1. 4.	×	12. 1. 4.	`48
38	鄭龜龍	징역 3년	8. 2. 4.	12. 2. 20.	×	8. 2. 4.	×	`48
40	姜敏洙	징역 1년6월	8. 2. 4.	×	×	12. 1. 4.	×	`48
41	金用忠	징역 1년6월	8. 2. 4.	12. 2. 20.	×	8. 2. 4.	×	`48
46	金恒律	벌금 30円	8. 2. 4.	×	8. 2. 4.	×	×	`48
51	玄戊生	벌금 30円	8. 2. 4.	×	8. 2. 4.	×	×	`48
52	池甲生	벌금 30円	8. 2. 4.	×	8. 2. 4.	×	×	`48

* 鄭龜龍은 光州地方法院 木浦支廳(1913. 4. 19.)과 大邱覆審法院(同年 6. 29.)에서 재판을 받았다.

* 벌금형의 경우 <형사사건부>에 판결집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우선 실형을 선고받은 金蓮日, 姜昌奎, 鄭龜龍, 金用忠, 姜敏洙 등 5명에 대해서는 모두 판결확정일, 판결집행일, 故障申請日 등이 나온다.¹⁴⁾ 이런 사실은

명이며, 대정군은 18,098명이고, 中面은 4,728명이다. 이 중 남자는 2,163명이며, 관공리와 양반 및 유생은 8명, 농민은 1,432명이며, 日稼, 기타, 무직은 나타나지 않는다. 자세한 것은 이현창, 『民籍統計表의 해설과 이용방법』(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7), 127쪽 참조.

13) 법정사 항일운동은 1년 6개월 후인 1920년 4월 12일자 『매일신보』에 짧막하게 보도되었을 뿐이다(앞의 주 11 참조).

14) 고장신청은 권석판결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것인데,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이다.

이들이 모두 1차 재판이 끝난 후에 체포되었음을 말해준다. 김연일은 판결확정일이 1920년 4월 5일인 점에서 1920년 2월이나 3월초에 체포된 듯하다.¹⁵⁾ 그리고 姜昌奎는 1922년 12월 28일에 체포되었다.¹⁶⁾ 그리고 鄭龜龍과 金用忠은 고장신청일이 1923년 2월 20일인 점에서 비추어보면 2월 17일에서 20일 사이에 체포되었을 것이다. 姜敏洙의 경우 고장신청일이 나타나 있지 않고 다만 판결확정일이 1923년 1월 4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문면 그대로 보면 1922년 12월말경에 체포되었고, 궤석판결에 대한 고장신청을 하지 않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듯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참여자에 대해서는 <수형인명부>에 판결확정일이 없고 또 <형사사건부>에 판결집행일도 없다. 그리고 復權도 1938년이 아닌 1948년 정부수립 이후에 되었다.¹⁷⁾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끝내 체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궤석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추후 조치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추론을 할 수 있다. 참여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들은 끝까지 추적하여 체포하였으나, 그렇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추적과 체포를 포기하였다. 조선총독부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우선 참여 정도가 경미하고 또 선도교와 관련된 이들은 장차 제주도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여 적극적으로 체포하려고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주모자인 김연일, 방화를 지휘한 강창규, 격문을 작성한 정구용, 우대장인 강민수·김용충 등이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여 동안 제주도에 체포되지 않고 숨어 지낼 수 있었다.¹⁸⁾ 이 사실은 당시 제주도민의 정서와 나아가 법정사 항

15) 『매일신보』에서는 1920년 4월 12일에 김연일의 체포소식을 전하고 있다(앞의 주 11 참조).

16) 『매일신보』 1923. 2. 18.(김광석, 「법정사 항일운동의 재인식」, 앞의 심포지움 자료집 45쪽에서 재인용).

17) 판결확정 이후 일반복권은 1938년(昭和 13. 7. 勅令 77 復權令)과 정부수립후인 1948년(1948. 9. 27 大統領令 8 復權令) 두 차례 있었다. 다만 개별사면을 통한 복권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18) 김연일은 ‘가대악’이라는 오름 아래의 농가에 은신하고 있었으며, 주민들은 그를 영웅적 독립운동가로 인식하였고(김창민, 앞의 발표문, 34쪽 참조), 강창규도 제주도에 체포되었다

일운동의 성격을 잘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⁹⁾

2. 適用 法條와 刑量

이어서 적용법조와 형량에 대해 살펴보자. 위 66명 가운데 기소된 47명의 犯罪標目은 ‘騷擾’이며, 적용 법조는 ‘騷擾 및 保安法 違反’이고, 부분적으로 ‘放火罪’(김상해[18])와 ‘銃砲火藥類取締令 違反’(이춘삼[27])이 추가로 적용되었다. 그리고 강창규(36)의 경우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박찬식의 표²⁰⁾에는 방화를 지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형량으로 보아 ‘방화죄’가 추가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에 대한 적용법조는 형법상의 소요죄, 방화죄, 보안법, 銃砲火藥類取締令 등이다.

“소요죄”는 「조선형사령」으로 의용된 「형법」 “제2편 죄 제8장 소요의 죄”를 일컬으며 제106조와 제107조 2개조로 되어 있는데, 제107조는 未遂犯 처벌규정이므로 제106조가 적용되었다. 「보안법」은 1910년 칙령 제1호에 의해 효력이 인정된 1907년 법률 제2호 「보안법」이다. 그런데 「보안법」은 부칙을 포함하여 10개조로 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적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정구용의 대구복심법원 판결에는 제7조가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보안법 위반”은 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생각되며, 제7조는 정치에 관한 언동을 규제하거나 치안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총포화약류취체령」은 1912년 제령 제3호로 제정된 것으로 총포나 화약류와

(앞의 주 16 참조). 나머지 정구용 등도 제주도가 아닌 타지역으로 도주하였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1918년 11월 제주도의 보천교도들이 현성금을 몰래 목포로 이송하던 중 발각되어 보천교 주요지도자들이 체포되었다(김정인, 앞의 논문, 56쪽). 이 사실에서 보듯이 제주도와 육지와의 왕래를 면밀히 감시하던 조선총독부가 이들의 出島를 적발하지 못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여겨진다.

19) 또한 거사 전인 10월 4일에 이장들에게 격문을 발송하고 10월 5일부터 사실상 항쟁이 본격적으로 되었는데도 경찰에 밀고한 사실이 없는 사실에서도 제주주민의 인식과 지지를 알 수 있다(김광식의 앞의 발표문, 58쪽).

20) 박찬식, 앞의 논문, 11쪽.

그 제조기계 따위를 제조·소지·매매 등을 할 때에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처벌한다. 총포 따위의 제조·소지 등을 규제·금지하는 것은 무장투쟁을 억압하기 위한 조치이며, 각각의 행위태양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천円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00円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였다.²¹⁾ 방화죄는 「형법」 “제2편 죄 제9장 放火 및 失火의 죄”를 일컬으며, 공공의 안전, 공공위험의 예방을 위해 건물 등을 방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위에서 보듯이 보안법과 소요죄가 가장 위력을 발휘하였다고 할 수 있다.²²⁾ 보안법은 大韓帝國의 법령으로 일본인에게만 적용되는 「保安規則」(1906, 統監府令 10)과 짝하는 것으로 모범인 「治安警察法」(1900, 법률 36)보다 규제나 처벌 등이 더욱 엄하다. 安寧秩序를 유지하기 위해 結社와 集會를 해산시키고 문서나 도서의 게시 공포를 금지할 수 있으며, 정치와 관하여 不穩한 언동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특정지역에서 퇴거를 명하거나 출입을 금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사건에 적용된 제7조는 정치에 관련하여 치안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笞刑이나 10개월 이하의 금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였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조선형사령」으로 의용된 「형법대전」 제473조(謀殺人律) 등이나 보안법 제7조(정치에 관한 내용)가 주로 적용되었는데, 3.1운동이 발발하기 전에는 보안법이 치안법의 대표이었다.²³⁾

소요죄(형법 제106조)는 多衆이 모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행위를 처벌하

21) 이와 유사한 대한제국의 법령으로는 「銃砲及火藥類團束法」(1907 법률 5)이 있으며, 일본은 1884년 大政官布告 제32호 「爆發物取締罰則」이 있다. 「조선형사령」 제1조 제3호에서는 「爆發物取締罰則」을 의용하고 있고 또 「銃砲火藥類取締令」 부칙 제3호에서는 위 벌칙의 효력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

22) 1910년대 무단통치기의 治安法 내지 彈壓法の 현황 등에 대해서는 鈴木敬夫, 『法을 통한 朝鮮植民地支配에 관한 研究』(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出版部, 1989), 59~100쪽 참조.

23) 보안법은 1912년에 최초로 적용되었다(村崎滿, 「保安法の史的素描」, 『朝鮮司法協會雜誌』 22-1(朝鮮司法協會, 1943.1), 31面).

는 것으로 공동의 목적이 없어도 성립한다. 만약 공동의 목적이 “國憲(朝憲)의 紊亂”이면 소요죄가 아닌 내란죄(동법 제77조)가 성립한다.²⁴⁾ 國憲(朝憲)의 紊亂에는 “정부를 전복하거나 정치의 핵심을 파괴하거나 영토의 전부나 일부를 僭竊하는 행위”가 포함된다.²⁵⁾ “불무황제가 출현하여 국권을 회복할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국헌의 문란에 해당하고 따라서 內亂罪가 성립한다.²⁶⁾ 따라서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해서도 내란죄의 적용이 가능하였다.²⁷⁾

그런데 왜 조선총독부는 내란죄가 아닌 소요죄²⁸⁾나 보안법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을까? 내란죄는 일본에서는 大審院, 조선에서는 고등법원의 관할에 속한다.²⁹⁾ 이렇게 되면 소요죄로 기소된 47명을 모두 서울에 있는 고등법원에서 재판해야 하는 난제가 발생한다. 만약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전원을 서울로 이송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면 제주 지방에서만 그치고 말 사건

24) 牧野英一, 『改正 日本刑法』 第54版(東京: 有斐閣, 1935), 618面.

25) 牧野英一, 앞의 책, 653面.

26) 朝鮮高等法院은 1919년 9월 18일 판결에서 “조선의 독립운동을 국토의 침탈에 해당하고 조헌을 문란하는 행위”라고 하여 내란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劉基天, 『刑法學: 各論講義下』 (一潮閣, 1977), 247쪽 참조).

27) 3·1운동에 대한 재판에서도 ‘내란죄’를 적용할 것인지, ‘소요죄’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되었다. 豫審判事는 손병희 외 민족대표자 33인에 대해서 내란사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조선총독부재판소령」 등에 따라 고등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검찰의 의견을 들어 내란죄가 아닌 「보안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법원의 관할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고등법원의 관할결정문의 主文에는 京城地方法院을 지정하였을 뿐, 사건을 京城地方法院에 送致한다는 내용은 없었고, 다만 그 내용은 이유에만 있었다. “사건을 京城地方法院에 送致한다”는 내용이 없는 주문에 근거하여 변호인은 “이 사건이 京城地方法院에 系屬되어 있지 않고 또 고등법원에서도 떠나서 현재 사건이 계속된 법원이 없고 따라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법원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석방하라”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따라 경성지방법원에서는 公訴不受理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김사가 京城覆審法院에 控訴하여 京城覆審法院에서 재판을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김병화, 『한국사법사: 근세편』(일조각, 1982), 481~495쪽 참조.

28) 내란죄의 경우 행위태양에 따라 首魁는 사형에서 단순참가자는 3년 이하의 禁錮인데 반해, 소요죄는 각각 10년 이하의 懲役과 50円 이하의 벌금이다.

29) 「朝鮮總督府裁判所令」 제3조 제3항 “고등법원은 전항의 외에 재판소구성법에 정한 대심원의 특별권한에 속한 직무를 행함”; 「裁判所構成法」 제50조 제2항에서는 내란죄(형법 제77조·제79조)에 대해서는 大審院의 특별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되는 뜻밖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소요죄의 保護法益은 “한 地方에서의 法秩序”이고, 내란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존립 그 자체”이다.³⁰⁾ 따라서 내란죄를 적용하면 식민지 지배의 부당성과 항일운동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버린다. 나아가 이는 그 동안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대내외적으로 선전한 총독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런데 소요죄를 적용하면 식민지배 자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한 지방에서의 불만의 표출에 그쳐버리는 결과로 된다. 따라서 처벌 자체의 강도보다는 법적 절차가 내포하고 있는 상징성을 중시하였다.

법정사 항일운동에 적용된 법조는 대부분 형법상의 소요죄와 「보안법」 위반이며, 나머지 방화죄나 「銃砲火藥類取締令」 위반은 참여자의 개별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다. 그리고 “격문을 돌리고 …… 일본경찰을 포박하는 행위”는 모두 일본의 식민지배에 항거하는 것으로 단일한 목적에 의한 1개의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두 개의 죄명에 걸리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개인 ‘想像的 競合’에 해당한다. 상상적 경합범은 법정형이 가벼운 죄는 무거운 죄에 포함되어 1개의 죄로 처벌된다. 소요죄의 경우 首魁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적극가담자는 6개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단순가담자는 50円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안법 제7조 위반자는 笞 50 이상 또는 2년 이하의 禁獄에 처하는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따라 笞刑은 20日 이하의 拘留나 科料로, 禁獄은 禁錮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보안법」 제7조 위반보다는 소요죄의 법정형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소요죄로만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실제 재판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은 소요죄의 최고형인 징역 10년이다.³¹⁾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자한 자에 대한 형량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30) 유기천, 앞의 책, 278쪽.

31) 구체적으로 적용법조를 알 수 있는 것은 정구용 제2심 대구복심법원 판결문을 통해서이다. 그러나 위의 행위가 과연 별개의 행위로 2개의 법조문에 위반하는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위 복심법원 판결문에서는 ‘상상적 경합’임을 명시하고 있다.

〈표 4〉 참여자의 형량

형벌	懲役											罰金	不起訴	獄死	합계
	10년	8년	7년	6년	4년	3년	2년	1년6월	1년	6월	소계				
인원	1	1	1	2	4	4	4	2	11	1	31	15	18	2	66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법정사 항일운동 참가자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66명 가운데서 기소된 인원이 46명으로 70%이며, 기소된 46명 가운데 67%인 31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법정사 항일운동을 주도한 金蓮日(1)은 징역 10년을, 좌대장 房東華(39)는 징역 6년, 후군대장 金三萬(3)은 징역 4년, 중군대장 梁南久(4)는 징역 4년, 謀師 張林虎(5)은 징역 4년, 격문을 작성한 鄭龜龍(38) 징역 3년, 우대장 姜敏洙(40)·金用忠(41)은 징역 1년6월을, 방화를 지휘한 姜昌奎(36)는 징역 8년, 放火罪가 추가된 金商亥(18)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李春三(127은 銃砲火藥類取締令 위반이 추가되었지만, 가장 가벼운 징역 6월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63세라는 고령인 점이나 다른 사정 때문인 듯하다. 그리고 징역 7년을 선고받은 朴周錫(2)은 도내에서 신망이 있는 인물이었다.³²⁾

그리고 단순참여라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에도 고액의 벌금 30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1919년 3.1운동 지도자급 33인에 대한 양형이 최고 징역 3년에서 최저 징역 1년6개월인 점에 비추어보면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여실히 알 수 있다.³³⁾

형량의 과중성은 조선총독부 법원조차도 인정하였다. 이는 1923년 大邱覆審法院의 정구용 공소심 판결에서 제1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 정구용은 1918년 당시에는 체포를 피하여 1923년 1월말 경에 체포되어 정식재판에 회부되었다. 1923년 4월 1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는 1919년 2월 궐석재판에서와 같은 징역 3년을 선

32) 김광식, 앞의 발표문, 48쪽 참조. 또 이에 따르면 강창규는 선위선봉대장이었다고 한다.

33) 南興祐, 「日帝의 韓國侵略에 있어서의 法規範과 그 適用에 관한 問題」, 『亞細亞研究』 12-1 (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 1969), 49쪽.

고하였다. 정구용은 이에 대해 控訴를 제기하였고 大邱覆審法院에서는 같은 해 6월 29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대구복심법원에서는 정구용의 행위를 「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며, 아울러 3.1 운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한 「政治에 관한 犯罪處罰에 관한 건」(1919년 4월, 制令 제7호)³⁴⁾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후자의 법정형이 전자의 법정형보다 무겁기 때문에 「政治에 관한 犯罪處罰에 관한 건」이 적용되지 않고 앞서 본 것처럼 소요죄만 적용하였다.³⁵⁾ 결론으로 사실인정과 적용 법조에는 잘못이 없지만 형벌이 과중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제1심 판결의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였다.³⁶⁾

벌금형은 선고받은 사람은 15명인데, 모두 그 금액이 30円이다. 소요죄의 단순가담자의 법정 최고형은 50円이다. 법정형에 비추어 벌금 30円이 절대적으로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참가자들은 대부분 농민이거나 무직 또는 일용직이며 지역사회에서의 위상도 그리 높지 않았다.³⁷⁾ 이러한 그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면 벌금 30円 역시 과중하다.³⁸⁾

34) 이는 정치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여 다수 공동으로 安寧秩序를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하려고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여 형벌을 강화하였으며, 또 외국에서의 범죄도 처벌하여 海外獨立運動家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1925년 이후 治安維持法으로 옮겨가는 가교의 역할을 하였다(한인섭, 『한국형사법과 법의 지배』(한울아카데미, 1998), 36~37쪽 참조).

35) 정구용에 대해 1919년 제령 제7호를 적용한 것은 ‘刑罰不遑及의 原則’에 위반된다(행위 후의 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정구용에 대해 1919년 4월 이후 어떤 행위에 대해 기소하였는지를 알 수 없지만, 표면적으로는 근대형법의 대원칙인 ‘刑罰不遑及의 原則’을 위반하였다.

36) 大邱覆審法院의 控訴審 판결의 형량에는 3·1운동 참가자와의 형평성,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전환한 식민정책의 변화와도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형량이 절반으로 삭감된 이면적 이유는 판결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

37) 월평리 참가자들은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이었다(김창민, 앞의 논문, 43~47쪽).

38) 1939년 제중국을 심는 인건비가 하루 1원 20전이었으며, 이를 통해 1918년에는 인건비는 하루 1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김창민, 앞의 논문, 42쪽). 물가상승률뿐만 아니라 실제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와 노동시장의 여건까지 고려한다면 벌금 30円은 엄청난 고액이었을 것이다.

3. 節次法的 檢討

식민지기 형사절차는 「조선형사령」에 의용된 일본의 「형사소송법」이 기본이며, 「조선형사령」에서 特則을 두어 식민지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당시 일본 형사절차에서의 특징은 수사절차상의 강제처분권이 豫審判事에 게 집중되어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사법경찰관에게는 현행범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독자적인 강제수사권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에 근대적인 형사절차를 도입하는 첫 순간부터 법관에 의한 강제수사권의 통제라는 근대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철저하게 배제하였다. 현행범의 경우에는 검사뿐만이 아니라 사법경찰관도 예심판사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았다.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검사에게 예심청구의 재량권을 인정하였고, 近代刑事訴訟法의 대원칙인 公判中心主義를 形骸化시켰다.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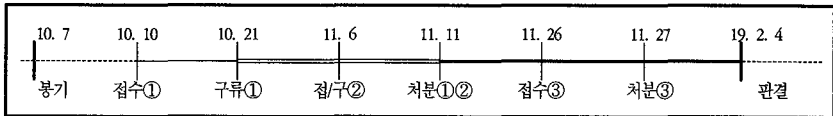
먼저 법정사 항일운동을 담당한 사법기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910년 합방 후 일본은 統監府裁判所를 명칭만 朝鮮總督府 裁判所로 개칭하였다. 1912년 「朝鮮總督府裁判所令」(제령 4)을 개정하여 高等法院, 覆審法院, 地方法院 등 3級3級制로 고치고, 지방법원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 지방법원 支廳을 설치하였으며, 아울러 각급 재판소에는 檢事局을 竝置하였다. 지방법원 지청에 대해서는 1914년 「朝鮮總督府地方法院支廳의 名稱, 位置 및 事務取扱區域」(朝鮮總督府令 25)을 공포하여 다시 정비하였다. 1912년 4월에 설치된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은 민사와 형사단독사건만을 다룰 수 있었다.⁴⁰⁾ 소요 죄는 법정최고형이 징역 10년으로 합의부사건에 해당되므로(「조선총독부재판소령」 제4조 제1항 제4호) 따라서 제주지청의 관할에 속하지 않고, 지방법원과 거의 동격으로 형사합의사건까지 담당할 수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과 목

39) 정궁식, 앞의 책, 265~267쪽 참조.

40) 지청을 3등급으로 구분하여 민형사 합의사건 등 거의 모든 사무를 관장할 수 있는 지청과 刑事豫審事件까지만 관장할 수 있는 지청, 민형사 단독사건만을 관장할 수 있는 지청으로 구분하였다(법원행정처, 『법원사』(법원행정처, 1995), 80~81쪽).

포경사국의 관할에 속한다.

법정사 항일운동을 시간대 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사전 준비를 거쳐 10월 4일 격문을 작성하여 배포하였고, 5일부터 6일까지 법정사에 봉기군을 집결시켜 10월 7일 새벽에 행동을 개시하였고, 400여 명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세 차례에 걸쳐 66명이 체포되어, 각각 검사의 처분과 재판을 받았다. 참가자들이 체포에서부터 판결까지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접수/처분 ①은 부록의 1-41; ②는 42-44, ③는 45-66에 해당함

법례 : — : 경찰 과정 = : 검사국 과정 — : 법원 과정 (제1차의 경우)

〈그림 1〉 사건처리 흐름도

먼저 당시 형사소송절차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현행법의 경우에는 판사가 발부한 令狀 없이도 체포가 가능하며(「형사소송법」 제58조), 체포 후 검사 등은 24시간 이내에 신문하여 구류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동법 제148조 제2항). 검사는 수사를 종료한 후 예심을 청구해야 한다(동법 제62조).⁴¹⁾ 하지만 「조선 형사령」에서는 원칙적으로 공판을 청구해야 하고 예외적으로만 예심을 청구할 수 있다(동령 제16조). 司法警察官은 피고인을 審問을 하기 위해 留置한 후 14일 이내에 검사국에 送致하든가 석방하여야 하며(동령 제13조), 피고인을 송치 받은 검사는 피고인을 구류하고 구류한 20일 이내에 기소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을 석방하여야 한다(동령 제15조). 즉 경찰 등은 범인을 체포·조사 하였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검사는 범인을 留置하였으면 20일 이내에 재판에 회부하든가 석방하여야 한다.

41) 林頼三郎, 『刑事訴訟法論』(東京:巖松堂書店, 1921), 490面; 이 법조문만으로는 起訴強制主義로 보이지만,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많은 논란을 거쳐 이 때에는 起訴便宜主義로 운영되고 있었다.

시간적 흐름과 법령을 연계하여 처리과정을 되짚어보자. 10월 7일 새벽에 거병한 봉기군은 훈련이나 인원, 화력면에서 일본헌병이나 경찰보다 열세였기 때문에 곧 진압되었을 것이다. 경찰과 검사국에서는 세부적으로는 3차에 걸쳐, 크게는 2차에 걸쳐 참여자를 검거하고 留置·句留, 起訴·不起訴하는 등 법적 처리하였다.

경찰은 목포경찰의 지원을 받고 하원에 본부를 두고 수사에 착수하였다.⁴²⁾ 10월 10일 1차로 체포한 朴周錫(2) 등 36명과 아직 체포되지 않은 불무황제 金蓮日(1), 방화를 지휘한 姜昌奎(36), 격문을 작성한 鄭龜龍(38), 좌대장 房東華(39), 우대장 姜敏洙·金用忠(40, 41) 등 41명을 유치하였다. 이 때 체포된 핵심 주모자는 朴周錫(2), 후군대장 金三萬(3), 중군대장 梁南久(4), 좌대장 房東華(39), 謀師 張林虎(5)뿐이었다. 그러면 경찰은 핵심 주모자들이 거의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포검사국에 송치하였을까? 우선 역할과 형량에서 보듯이 적극적으로 행동한 사람들은 거의 다 드러나서 체포하였기 때문인 듯하다. 다른 한편 속히 사건을 종결시켜 제주 주민과 이들을 물리적으로 격리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법정사 항일운동이 당시 언론에 거의 보도가 되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때 이들에 대한 조사는 참여 정도 등 본인의 행위만이 아니라 다른 참가자들을 신고할 것에 대해서도 이루어진 듯하다. 그 결과 추가로 3인이 더 구류되었다. 그리고 그 조사는 자백 등을 얻기 위한 고문을 하는 등 상당히 가혹한 듯하다.⁴³⁾ 이는 기소된 후 재판과정에서 27세의 젊은 姜春根(28)이 이듬해 1월 6일에, 30대 후반인 姜壽五(37)가 12월 27일에 사망한 사실에서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들 41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고 경찰은 법정기간인 14일이 되기 이틀 전인 10월 21일 검사국에 송치하였다. 검사국에서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42) 김창민, 앞의 발표문, 36쪽.

43) 주민의 기억에 따르면 불기소 처분을 받은 현재천(25)은 고문에 못 이겨 자백을 하였으며, 그 결과 마을에서 추방되었다고 한다(김창민, 앞의 발표문, 37쪽).

역시 조사가 이루어져 마침내 11월 11일에 검사의 처분이 있었다. 33명에 대해서는 예심에 회부하지 않고 직접 공판을 청구하였고, 혐의가 드러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8명(29~35)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이들을 조사하여 구류한 3인에 대해서도 같은 날 검사가 처분하였는데, 2명(42, 43)에 대해서는 공판을 청구하였고, 나머지 1명(44)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1차 조사의 결과로 이어서 2차의 검거가 있는 듯하다. 11월 26일 22명(45~66)을 송치받은 검사국에서는 그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한 15명(45~59)에 대해서는 구류하지 않고 기소하였으며, 나머지 7명(60~66)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하여 석방하였다.⁴⁴⁾

기소된 46명에 대한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그 중 2명은 재판 도중에 옥사하였으며, 한 차례의 재판만 받고 1919년 2월 4일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는 상소를 포기하여 판결선고일 또는 이튿날에 형이 확정되었다. 다만 關席裁判을 받은 8명에 대해서는 판결은 확정되었지만, 변경될 여지는 있었다. 1918년 10월 7일 법정사 항일운동의 발생으로부터 1919년 2월 4일 이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의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4개월이 채 소요되지 않았다. 약 400여 명이 참가하였고, 게다가 주모자인 김연일 등이 검거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66명을 검거·조사하여 44명을 기소한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이처럼 조속한 조선총독부의 처리는 그들의 조급함과 사건에 대한 위기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공소심 판결문이 남아 있는 정구용은 제1심에서 궤석판결로 징역 3년형을 받았고,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923년 4월 1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제1심 재판을 받았다. 먼저 궤석판결과 그 회복절차에 대해 간단히 살

44) 11월 6일에 사건이 접수된 기소된 2인에 대해서는 접수일과 구류일이 같다. 문서상으로는 경찰에서의 조사단계가 아닌 검사국에서의 조사단계에서 밝혀졌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경찰에서의 단계에서 검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11월 26일에 접수된 사건은 구류일이 나타나지 않고 이튿날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문서만으로 보면 이들은 경찰이나 검사국에 의해서 전혀 留置 또는 拘留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 경찰 단계에서는 사실상의 拘禁이 있었을 것이다.

피보자. 關席判決을 할 경우에는 피고의 최후 주소지의 재판소가 그 관할이 되며(「형사소송법」 제29조), 피고인의 본적이나 최후의 주소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고지서를 적어도 1개월간 재판소의 계서관에 첨부하여 공시한다(동법 제227조). 결석판결로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하여 故障을 신청할 수 있으며(동법 제207조), 고장신청의 기간은 3일로 하는데, 이 기간은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는 결석판결을 송달한 날로부터 시작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스스로 그 판결을 받거나 판결집행으로 형의 선고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시작한다(동법 제229조). 고장을 신청한 자는 결석판결을 한 재판소에 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동법 제230조), 고장의 신청을 수리한 경우에는 다시 통상의 규정에 따라 재판을 한다(동법 제233조). 정구용은 제1심 판결에 대한 고장신청을 1923년 2월 20일에 하였는데, 「형사소송법」 제229조에 비추어 보면 1918년 10월 이후 4년여 동안 숨어 있다가 1923년 2월 17일 경에 체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46명이 실제로 복역을 하였거나 또는 벌금을 납부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징역형을 선고받은 31명은 <형사사건부> 등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를 근거로 추정하면 실제로 복역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15명이다. <형사사건부>의 판결요지 부분에는 “罰金 30円, 完納하지 못할 때에는 30日 間 勞役場 留置”라는 문구가 있다. 즉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노역장 유치를 명한 것이다.⁴⁵⁾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朝鮮笞刑令」(1912년, 제령 제13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朝鮮笞刑令」은 「朝鮮刑事令」의 시행으로 「刑法大令」에 규정된 태형이 폐지되자, 봉건적이고 야만적이며 효율적인 태형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이는 한국인에게만 적용되며 통상적인 형벌을 태형으로 換刑할 수 있게 하였다. 「朝鮮笞刑令」의 적용대상은 ①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할 자 가운데 그 정상을 고려할 경우(동령 제1조), ② 100円 이하의 罰金 또는 科

45) 「형법」 제18조에서는 벌금을 납부할 수 없으면 1일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勞役場 留置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료에 처할 경우 가운데 住居가 일정하지 않거나 재산이 없는 사람(동령 제2조), ③ 벌금 또는 과료를 미납한 사람(동령 제3조)이다. 벌금이나 과료를 태형으로 換刑處分할 수 있는 주체는 검사와 즉결판서의 장이며, 1円 또는 1日を 笞 1대로 환산하였다. 일본은 태형으로 식민지 지배에서 절대적인 공포분위기의 조성 과 최고의 소송경제라는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또 태형의 집행은 감옥이나 즉결판서에서 은밀히 집행하도록 하였다. 즉 식민지경찰은 태형을 가장하여 합법적으로 고문을 할 수 있었다. 판결문에서는 벌금형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를 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조선태형령」 제2조(검사의 처분) 또는 제3조(벌금의 미납)에 따라 대부분 태형 30대로 換刑處分을 받았을 것이다.⁴⁶⁾

IV. 맺음말

제주도에서 일본인을 축출하고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1918년 10월 7일 새벽 서귀포 일대를 습격한 범정사 항일운동은 약 400명이 참여하였다. 10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사건이 처리하여 이듬해 2월 4일 제1심판결의 선고가 있어서 대부분 종결되었다. 참여자 가운데 66명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46명이 기소되어 그 중 2명은 재판 도중에 옥사하였고, 31명은 징역 10년에서 6개월의 실형을, 15명은 벌금 30円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조선태형령」에 따라 태형 30대로 환형처분되었을 것이다.

범정사 항일운동에 적용된 죄목은 「형법」의 소요죄와 「보안법」 위반이었는데, 양자는 상상적 경합으로 실제적으로는 소요죄만으로 처벌을 받았다. 소요죄와 「보안법」은 1919년 4월 제령 제7호 「政治에 關한 犯罪處罰의 件」과 1925

46) 태형을 집행할 때에 채찍은 소의 음경으로 만들고 끝에 납을 달아 때리면 납이 살 속으로 들어가 살 조각이 튀었다. 한 번 당하게 되면 그 날은 걷는 것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에게 업혀 나갔다. 죽었을 경우에는 사체는 그 날 밤으로 행방불명이 되었다(文定昌, 『軍國日本朝鮮侵略36年史(상)』(백문당, 1965), 82~85쪽). 「조선태형령」은 1919년 3·1운동 후 文化政治를 표방함에 따라 1920년 제령 제5호로 폐지되었다.

년 「治安維持法」이 적용되기 전의 대표적인 治安法 내지 彈壓法이었다. 참여자에 대한 형량은 이듬해 전국적인 규모로 대대적으로 발생한 3.1운동 지도자급의 인물에 대한 형량과 비교하여도 아주 높았다. 그리고 주모자와 적극참여자를 재빨리 제주 주민과 격리시켰고 또 사건 발생부터 제1심 판결의 선고까지는 채 4개월이 걸리지 않았으며 또한 한 차례의 재판만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제주도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처리는 일반적인 독립운동에 대한 처리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높은 양형과 빠른 절차의 진행은 법정사 항일운동이 무단통치기인 1918년 당시 제주 사회는 물론 조선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컸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를 처리하면서 「조선형사령」과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 경찰의 留置期間, 검사의 拘留期間 등을 준수하면서 처벌하였다. 그러나 식민지조선의 형사법제의 근간을 이룬 「朝鮮刑事令」은 인권보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누락되었다. 결국 적법절차의 준수나 인권보장은 外見的인 것일 뿐 실질은 그렇지 않다. 또 실제로 공식적인 처리과정보다 그 이전에 아니면 그 이면에 존재하는 비공식적인 처리과정의 문제로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는 알 수 없다. 참여자에 대해 다만 현재 사건의 실체를 어렵듯이 알려주는 자료만으로는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기 이전 단계의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주권이 박탈된 따라서 자주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식민지기 형사사법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일본의 대대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주동자인 김연일은 1년여, 봉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강창규, 정구용 등은 길게는 약 4년 동안 제주도에서 숨어 지낼 수 있었다. 이들이 제주도를 벗어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것은 제주 주민의 압목적인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을 조선총독부의 공식적인 자료만으로 추론하여 본다면 제주 주민의 지지를 받는 대중운동적 성격을 어느 정도는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부록

관련자 명단(1)

	성명	연령	주소	직업	형량	비고	직위 등	복권
1	金連日	??/48	도순	주지/무직	징역 10년	필석판결, 9. 4. 5. 확정	불무황제	'48
2	朴周錫	55	금악	농업/무직	징역 7년			'48
3	金三萬	55	도순	일용/무직	징역 4년		후군대장	'48
4	梁南久	55/29	도순	농업	징역 4년	梁南求	중군대장	'48
5	張林虎	63	도순	무직	징역 4년		謀師	'48
6	金泰和	39	대포	농업	징역 2년	金基和		'48
7	金明敦	46/42	덕수	농업	징역 1년			'38
8	金基水	21/52	월평	농업	징역 1년	金基洙		'38
9	崔泰祐	45	서흥	일용	징역 4년	崔泰裕		'38
10	姜奉煥	51	금악	농업	징역 2년			'38
11	文南奎	49	도순	농업	징역 3년			'48
12	李昇斌	28	하원	농업	징역 1년			'48
13	金武錫	31	월평	농업	징역 2년			'38
14	吳秉允	22	하원/도순	농업	징역 1년			'38
15	文南恩	44	도순	농업	징역 1년	11. 문남규의 제		'38
16	李宗昌	38	도순	농업	징역 1년			'38
17	金成洙	21	월평	농업	징역 1년			'38
18	金商亥	48/48	하원	농업	징역 6년	放火罪 추가무언급		'38
19	金斗三	25	영남	농업	징역 1년			'48
20	李達生	32	하원	농업	징역 1년			'38
21	姜基秋	35	하원	농업	불기소	7. 11. 9. 석방		×
22	高用錫	52	중문	농업	징역 3년			'48
23	趙柱成	36	월평	농업	징역 2년			'38
24	吳仁錫	38	상피	농업	불기소	7. 10. 28. 석방		×
25	玄才干	46	하원	농업	불기소	7. 11. 9. 석방		×
26	崔信日	42	월평	농업	징역 1년			'48
27	李春三	63/63	하원	농업(不記)	징역 6월	銃砲火藥類取締令 추가		'38
28	姜春根	27	오라	농업	기소	8. 1. 6. 사망		×
29	金胤錫	58	대포	농업	불기소	7. 11. 11. 석방		×
30	姜翼	42	오동	농업	불기소	7. 11. 11. 석방		×
31	文南振	52	도순	농업	불기소	7. 11. 11. 석방		×
32	姜英俊	20	월평	농업	불기소	7. 11. 11. 석방		×
33	李戊翼	21	월평	농업	불기소	7. 11. 11. 석방		×
34	李世仁	30	회수	농업	불기소	7. 11. 11. 석방		×
35	崔文洙	52	법환	농업	불기소	7. 11. 11. 석방		×
36	姜昌奎	??/41	사계	불기/무직	징역 8년	필석판결, 12. 1. 4. 확정	방화 지휘	'48
37	姜壽五		사계	불기	기소	7. 12. 27 사망, 강창규 제		×
38	鄭龜龍	??/31	도순	무직	징역 3년	필석판결, 12. 6. 29. 징역 1년 6월 확정(大邱覆審法院)	격문 작성	'48
39	房東華	32	도순	불기/농업	징역 6년	房河龍으로도 기재	좌대장	'38
40	姜敏洙	??/39	도순	무직	징역 1년6월	필석, 재판확정일 불기제	우대장	'48
41	金用忠	??/31	도순	불기/무직	징역 1년6월	필석, 12. 2. 20. 故障申請	우대장	'48
42	李允平	32	도순	농업	징역 1년			'38
43	金仁秀	20	慶北/도순	무직	징역 3년	8. 3. 1. 控訴取消 판결확정	김연일 조카	'48
44	韓允玉	18	도순	하인	불기소	7. 11. 11. 석방		×

관련자 명단(2)

	성명	연령	주소	직업	형량	비고	직위 등	복권
45	梁鳳	28	하원	농업	벌금 30円			‘48
46	金恒律	29	영남	농업	벌금 30円	필석판결		‘48
47	元仁水	51	하원	농업	벌금 30円			‘48
48	金仁松	41	하원	농업	벌금 30円			‘48
49	池丑生	42	하원	농업	벌금 30円			‘48
50	康斗玉	62	월평	단화직	벌금 30円			‘48
51	玄戊生	32	월평	농업	벌금 30円	필석판결		‘48
52	池甲生	30	하원	농업	벌금 30円	필석판결		‘48
53	吳寅植	23	하원	농업	벌금 30円			‘48
54	姜舜奉	35	하원	농업	벌금 30円			‘48
55	姜太河	22	하원	농업	벌금 30円			‘48
56	宋乙生	44	월평	농업	벌금 30円			‘48
57	金昌鏞	40	월평	농업	벌금 30円			‘48
58	李選逸	44	월평	농업	벌금 30円	李選榮		‘48
59	李奎奎	41	월평/하원	농업	벌금 30円			‘48
60	朴京洽	44	영남	농업	불기소	7. 11. 27. 석방		×
61	李自春	43	영남	농업	불기소	7. 11. 27. 석방		×
62	元性春	24	하원	농업	불기소	7. 11. 27. 석방		×
63	金丙日	23	하원	농업	불기소	7. 11. 27. 석방		×
64	金仁浩	38	하원	농업	불기소	7. 11. 27. 석방		×
65	高基棟	22	하원	농업	불기소	7. 11. 27. 석방		×
66	趙仁赫	48	도순	잡화상	불기소	7. 11. 27. 석방		×

④ 1-41: 10월 10일 접수, 10월 21일 구류, 11월 11일 기소 등 처분

42-44: 11월 6일 접수, 11월 6일 구류, 11월 11일 기소 등 처분

45-66: 11월 26일 접수, 11월 11일 기소 등 처분

×: 수형인 명부에 없는 명단임

‘38 : 昭和 13년(1938) 2월 15일 勅令 제7호 復權令에 의한 복권

‘48 : 紀元 4281년(1948) 9월 27일 大統領令 제8호 復權令에 의한 복권

※ <대정 7년도 刑事事件簿>(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과)을 토대로 하고 <동년 受刑人名簿>(광주지방법원 제주시청)을 참고로 작성하였다. 같은 항목으로 양자의 기재내용이 차이가 나는 것은 <刑事事件簿>의 기록은 앞에, <受刑人名簿>의 기록은 “/”로 구분하여 뒤에 기재하였다. 復權 여부는 <受刑人名簿>에만 나온다.

또한 『무오년 범죄사 형일운동의 성격』(제주학회, 2002. 11. 21)에 수록된 박찬식 및 김창민의 논문에 있는 자료를 참조하였다.

관련 법령 초록

1. 朝鮮에서의 法令의 效力에 관한 件(明治 43. 8. 制令 1)
 2. 朝鮮에서 施行해야 할 法令에 관한 法律(明治 44. 3. 法律 30)
 3. 朝鮮刑事令(明治 45. 3. 18 制令 11; 발체)
 4. 保安法(光武 11. 7. 27. 법률 2; 발체)
 5. 政治에 關한 犯罪處罰의 件(大正 8. 4. 15 制令 7)
 6. 刑法 (明治 40. 법률 45; 발체)
 - 7 刑事訴訟法(明治 45. 법률 19; 발체)
-

1. 朝鮮에서의 法令의 效力에 관한 件(明治 43. 8. 制令 제1호)

朝鮮總督府 設置 때에 朝鮮에서 效力을 상실해야 할 帝國法令 및 韓國法令은 당분간 朝鮮總督이 발하는 命令으로써 그 효력을 갖는다.

附則 本令은 公布日부터 施行한다.

2. 朝鮮에서 施行해야 할 法令에 관한 法律(明治 44. 3. 法律 제30호)

제1조 朝鮮에서 法律을 요하는 事項은 朝鮮總督의 命令으로 이를 規定할 수 있다.

제2조 前條의 命令은 內閣總理大臣을 거쳐 勅裁를 청해야 한다.

제3조 臨時緊急을 요하는 경우에 朝鮮總督은 직접 제1조의 命令을 발할 수 있다.

前項의 命令은 發布 직후에 勅裁를 청해야 한다. 만약 勅裁를 받지 못하면 朝鮮總督은 즉시 그 命令이 장애를 향하여 效力이 없음을 公布해야 한다.

제4조 法律의 全部 또는 一部를 朝鮮에 施行할 것을 요하는 것은 勅令으로 이를 定한다.

제5조 제1조의 命令은 제4조에 의하여 朝鮮에 施行되는 法律 및 특히 朝鮮에 施行할 目的으로 制定된 法律 및 勅令에 위배될 수 없다.

제6조 제1조의 命令은 制令이라고 칭한다.

附則 本法은 公布日부터 施行한다.

※ 명치 43. 8. 29. 긴급칙령 “朝鮮에서 施行해야 할 法令에 관한 件”과 동일한 내용이다.

3. 朝鮮刑事令(明治 45. 3. 18 制令 11)

제1조 형사에 관한 사항은 본령 기타의 법령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법률에 의한다.

제1. 刑法, 2. 刑法施行法, 3. 爆發物取締罰則, -- 9. 刑事訴訟法 (생략)

제5조 다음에 기재한 官吏는 檢事의 補佐로 하여 그 指揮를 받아 司法警察官으로 하고 犯罪를 搜查할 수 있다.

- 1. 朝鮮總督府 警務部長 2. 朝鮮總督府 警視, 警部
- 3. 憲兵將校, 准士官, 下士

제13조 司法警察官이 前條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被告人을 審問한 후 禁錮 이상의 刑에 해당할 자로 思料하는 때에는 14일 초과하지 아니하는 期間 동안 그 자를 留置할 수 있다.

제2항, 제3항 생략

제15조 檢事가 被告人을 拘留한 경우 20일 내에 起訴의 節次를 하지 않으면 被告人을 釋放하여야 한다. (제2항 생략)

제16조 檢사는 범죄수사를 종료하고 유죄라고 생각되는 때에는 公판을 구하여야 한다. 단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 사건이 복잡할 때에는 예심을 구할 수 있다.

제27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규정은 고장신청 및 재심의 소에 준용한다.

제29조 고장신청 또는 상소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제30조 고장신청을 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 언제라도 이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에 한 결석판결은 확정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제41조 다음의 법률은 폐지한다.

1. 刑法大全, 2. 鐵道事項犯罪處斷例, 3. 刑事裁判費用規則

刑法大全 제473조, 제477조, 제478조, 제498조 제1호, 제516조, 제536조 및 제593조의 죄 및 그 未遂犯에 관한 규정은 당분간 본령시행 전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서 생략)

제42조 본령 시행 후 여전히 효력을 갖는 구한국법규의 형은 다음의 예에 따라 본령의 형명으로 변경한다. 단 형의 기간 또는 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5년 이하의 流刑 또는 禁獄 → 有期禁錮

笞刑 → 20일 이하의 拘留 또는 科料

4. 保安法(光武 11. 7. 27. 법률 2)

제7조 政治에 關호야 不穩의 言論과 働作 又は 他人을 煽動과 教唆 或은 使用호며 又は 行爲에 關涉호야 因호야 治安을 妨害호는 者는 五十 以上の 笞刑 十個月 以下の 禁獄 又は 二個年以下の 懲役に 處호

5. 政治에 關한 犯罪處罰의 件(大正 8. 4. 15 制令 7)

전문 생략

제1조 ① 정치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여 다수 공동으로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하려고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단 형법 제2편 제2장의 규정(내란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전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선동을 한 자의 벌 역시 전항과 같다.

제2조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발각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3조 본령은 제국 외에서 제1조의 죄를 범한 제국신민에게 역시 적용한다.

6. 刑法 (明治 40년 법률 45호)

제2편 罪 제8장 騷擾의 죄

제106조 多衆이 聚合하여 暴行 또는 脅迫을 한 자는 騷擾의 죄로 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단한다.

1. 首魁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懲役 또는 禁錮에 처한다.
2. 타인을 지휘하거나 또는 타인에 率先하여 세를 도운 자는 6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3. 附和遂行한 자는 50圓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제2편 罪 제9장 放火 및 失火의 죄

제108조 방화하여 현재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또는 현재 사람이 있는 建造物, 汽車, 電車, 艦船 또는 鑛坑을 燒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懲役에 처한다.

제2편 罪 제2장 內亂에 관한 죄

제77조 ① 政府를 顛覆하거나 국토를 僭竊하거나 기타 朝憲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폭동을 한 자는 內亂의 죄로 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단한다.

1. 首魁는 死刑 또는 無期禁錮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군중을 지휘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금고에 처하고, 기타 제반직무에 종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3. 附和遂行하거나 기타 단순히 폭동에 간여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② 생략 (미수범 처벌 규정)

제1편 總則 (요약)

제6조 범죄 후 법률로 인하여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가벼운 것을 적용한다.

제54조 1개의 행위로 數箇의 罪名에 해당하거나 범죄의 수단 또는 결과인 행위로 다른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重한 罪에 定한 刑으로 處罰한다.

7. 刑事訴訟法(明治 23. 法律 96, 明治 45. 法律 19 개정)

제29조 闕席判決을 할 경우에는 피고의 최후 주소지의 재판소가 그 관할이 된다.

제62조 지방재판소 검사는 범죄의 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1 중죄라고 생각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예심판사에 대하여 예심을 구하여야 한다.

제2 경죄라고 생각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 輕重難易에 따라 예심을 청구하거나 직접 그 재판소에 기소할 수 있다.

제67조 현행의 重罪, 輕罪를 제외하고 豫審判事は 검사의 청구가 있지 않으면 예심에 착수할 수 없다.

제146조 구재판소 검사는 그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죄가 있음을 아는 경우에는 그 사건이 급속을 요하면 제144조에 규정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만약 피고인에 대하여 구류장을 발부한 때에는 3일 내에 기소절차를 하여야 한다.

제207조 對席判決로 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그 선고를 받은 자에게 (중략)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는 것 및 그 기간을 고지하여야 하고 또 권석판결로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하여 故障을 신청할 수 있는 것과 그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27조 금고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출두하지 않더라도 예심종결의 신고서 또는 公判呼出狀을 본인에게 송달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권석재판을 할 수 없다.

예심종결의 신고서 또는 公判呼出狀을 본인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소는 유예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에 피고인이 출두하지 않으면 권석재판을 한다는 고지서를 피고인의 親屬 또는 피고인의 본적 또는 최후 주소지의 시정 촌장에 송달할 수 있다. 만약 그 본적 또는 최후 주소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위의 고지서를 적어도 일개월간 재판소의 게시판에 첨부하여 공시한다.

제228조 권석판결은 검사 기타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권석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권석판결을 받은 자는 그 판결에 대해 고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229조 고장신청의 기간은 3일로 한다.

이 기간은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한 판결(중략)에 대해서는 권석판결을 송달한 날로부터 시작하고, 금고의 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스스로 그 판결을 받거나 판결집행으로 형의 선고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시작한다.

제230조 고장을 신청한 자는 결석판결을 한 재판소에 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3조 고장의 신청을 수리한 경우에는 다시 통상의 규정에 따라 재판을 한다.

제252조 控訴期間은 판결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5일로 한다.

결석판결을 받은 자는 고장기간 내에 고장신청을 하지 않고 직접 공소할 수 있다.

Legal Approach to Independence Movement of Beopjeong-Temple in 1918

Jung, Geung-Sik*

To restore the sovereignty of Korea and expel the Japanese from *Jeju-Island*, *Kim Yeomyil*(김연일), the head priest of *Beopjeong-Temple*, protested against Imperial Japan, but it had failed At October 1918 in *Jeju-Island*. The General Japanese Government in Colonial Korea applied The Act for Peace-Keeping(보안법) and Sedition in Penal Code against the participants of Independence Movement. He sentenced *Kim Yeomyil* to 10-years imprisonment the most heavy punishment in law and the trials concerning the participants of Independence Movement were very fast. In order to separate leading group of Independence Movement from people in *Jeju-Island*, The General Japanese Government in Korea did so. He handled them observing the principles and laws, regulations. So he protected human rights obviously, but the truth is not. The criminal Act in Colonial Korea which was fundamental, had not contained protecting human rights. Nevertheless the General Japanese Government in Korea pressured heavily, *Kim Yeomyil* and leaders were not arrested for long time owing to being helped by people in *Jeju-Island*, it means that protest in *Beopjeong-Temple* was Independence Movement.

[**Key Words**] *Beopjeong-Temple*, Independence Movement, Colonial Criminal Law, The criminal Act in Colonial Korea, The Act for Peace-Keeping, Sedition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